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184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9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(2592)

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브릿지테크놀러지(주)(김성재),
②극동건설(주)(문정동/박용득), ③지에스건설(주)(임병용),
④(주)삼보기술단(황규현), ⑤(주)천일(김도빈)

나. 전화번호 : ①02-732-0217 ②02-2280-6114 ③02-2154-2120 ④02-3433-3000
⑤02-558-1001

2. 지정번호 : 신기술 제781호

3. 명칭 :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

4. 신기술의 내용

<분야>

토목 > 교량 > 교량거더

<기술의 요지>

이 신기술은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기술에 대한 것으로, 동일 교량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,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적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.

<범위>

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위한 거더길이와 곡률반경, 형고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

5. 보호기간 : 2016.01.15. ~ 2024.01.14.(8년)

6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